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의 조정과 그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II. 주요골자

- 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 (안 별표)
- 나.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9조제1항)
- 다. 지방자치체의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개선 (안 제17조제1항)
- 라.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 (안 제18조제1항제3호)

III. 검토의견

1. 배경 및 경과

-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7월 30일 제정(동년 9월 1일 시행)된 바 있으나

- 그간 운영과정에서 포상금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일명 쓰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행위 등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로 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 통보(2004. 12. 30)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재조정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사항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신고포상금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조례시행 이후 6개월간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9개 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0만원이 세입 조치되고 49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는 바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04. 9. 1. ~ 2005. 2월말 현재)

(단위: 천원)

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국고귀속)		구 세입		포상금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	9	1,500	1	300	8	1,200	7	490

위반업소가 대부분 30평 내외의 소규모 업소로서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 여파로 과태료에 대해 큰 부담으로 여길 뿐 아니라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국고에 귀속된 사례도 있어 세입확보 차원에서 적정 금액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대체 지급하는 방안도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들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됩니다.

- 조문별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1) 안 별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과태료 부과액을 종전의 1/3 ~ 2/3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은 1/4 ~ 1/2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였는 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동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한 다음, 동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면서 환경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금액의 조정은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 내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부로 부터 시달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이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 안 제9조제1항 규정을 삭제한 것은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중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과태료부과 실적은 모두 주민신고에 의해 부과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신고포상금을 현금, 상품권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월 총액도 종전 5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조정한 것은 전문신고자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신고를 줄이고 포상금을 욕심낸 신고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감독에 의한 단속으로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7023호)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611호)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개정 2004. 11. 30>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산업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령 제155호)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721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267호)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 전문개정(2004. 1. 29)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39호)

제4조 (대규모점포의 업태등) 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는 별표 1과 같다